

中型機械 所有農家の 經營變化와 그 含意⁽¹⁾

朴 弘 鎭

이 글의 목적은 기계소유농가의 경영변화와 그 함의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농업구조개선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상층농이 중심을 이루는 기계소유농가의 경영변화는 기계이용률 제고를 위한 규모확대와 작업수탁으로 집약할 수 있고, 그 결과 상층농은 임차를 통한 경영지의 집적과 적극적인 작업수탁을 통하여 주도적의 실질적인 생산담당층으로 등장하였다. 한편 노동력부족하에서 탈농할 수밖에 없었던 중하층농은 작업위탁을 토대로 농업에 강고하게 체류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구조개선에 있어서 상층농의 규모확대 방안뿐만 아니라 중하층농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즉 생산성이 낮은 농가(위탁자)에서 생산성이 높은 농가로 작업단위의 이전을 의미하는 작업수탁을 최소한 마을단위에서 경지의 분산성을 극복하고 규모화의 이점을 살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1. 머 리 말

현재 한국농업의 ‘農業構造改善’은 UR 타결 이후 우리 농업의 장래를 결정하는 문제로 등장하였다. 농업구조개선에 있어서 핵심적인 과제는 영세소경영구조를 어떠한 생산주체에 의해서 고생산성을 달성할 수 있는 농업구조로 재편할 것인가에 있다.

현재 정부는 소수의 專業農 중심의 규모확대를 근간으로 농업구조개선정책을 추진하고 있다.⁽²⁾ 그러나 이것은 대다수의 중소농의 탈농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그 현실성 여부뿐만 아니라 농업의 총체적 생산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점⁽³⁾을 내포하고 있다.

(1)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2) 정부는 상업적 전업농의 육성을 통한 규모확대를 농업구조개선의 기본방향으로 하고는 이를 위한 생산기반의 정비, 농지제도의 개선, 농지유동화를 촉진하기 위한 중소농의 재촌탈농기회의 제공,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 등의 제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농어촌발전대책(1994)]. 이 중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미작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5ha규모의 전업농 10만과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 4천개소 등 규모화된 경영체를 집중 육성하고(이들이 전체 미작면적의 65%를 담당), 이와 더불어 기계화의 추진, 생산기반의 정비, 생력적 기술의 보급 등을 통한 생산비 절감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가진 미작농업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3) 농업구조개선과 관련된 연구들[장상환 외(1991), 이영기(1992), 박진도(1994)]에서는 정부의 전업농육성정책이 첫째, 정부가 상정하고 있는 전업농의 규모로 국제경쟁이 가능한지가 명확치 않고(미국 미작농가의 평균규모는 82ha), 둘째, 하층농의 탈농조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상층농의 생산력적 우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상층농을 중심으로 한 농업구조재편은 이루어질 수 없고, 셋째, 상층농을 중심으로 한 개별경영의 규모확대는 경영의 단작화, 경지의 대량 감소의 촉진, 농촌지역의 空洞化를 촉진시킴으로써 농업해체를 가속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그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생산조직(지역영농집단 또는 지역농업조직)을 주제로 한 지역농업론 역시 국내에서 그 實例를 찾아볼 수 없고, 구체적인 방법과 각 地帶별 형성 조건에 대해서는 試論的인 성격이 강하다.⁽⁴⁾ 또한 생산조직의 발전수준이 낮은 우리 현실에서 농업생산요소 이용에 관한 총체적인 합의를 토대로 한 지역영농집단을 조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따라서 현실의 농업구조하에서 어떠한 생산주체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각 계층의 농가들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고, 각 계층간의 생산을 둘러싼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水稻作에서 중형기계⁽⁵⁾ 소유농가(이하 기계소유농가)의 경영변화와 그 합의를 살펴본다. 기계소유농가는 여타 농가보다 생산성이 높고, 水稻作의 주생산담당층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의 경영변화와 그 합의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이들의 성장가능성과 생산에 있어서 여타 농가와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水稻作에서 농업구조개선의 방향과 관련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中型機械 所有農家의 特徵

농업관련 통계자료에서는 기계소유 유무 또는 결합유형을 기준으로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중형기계의 계층별 보급률을 토대로 기계소유농가가 어떤 계층인가를 살펴보도록 하자. <表 1>은 농업총조사에 나타난 각 계층의 보급률 및 보유율(기종별 각 계층 농기계소유대수를 각 기종 전체대수로 나눈 것)이다.

표를 보면, 중형기계 보급 초기였던 1980년의 경우 전반적으로 중형기계 보급률이 매우 낮은 가운데 경영규모가 클수록 보급률이 높은 모습을 볼 수 있다. 보유율을 보면 2ha 이상 상충농이 트랙터 40%, 이앙기 58%, 콤팩트인 51%로 중형기계 전체 보급대수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4) 박진도(1994)는 생산조직을 농업주체로 한 지역농업론을 대안으로 제기했다. 지역 농업론은 일 본에서 제기된 것으로서 농가의 합의를 통한 지역의 농업생산자원을 총체적으로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조직, 특히 집단적 토지이용질서를 형성시키는 조직(지역영농집단 또는 지역농업조직)이 농업구조개선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박진도(1994, 3장)를 참고.

(5) 수도작에서 사용되는 기계를 마력수나 손익분기규모 등의 기준에 의해서 소·중·대형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기계화체계를 기준으로 부분작업의 기계화를 가져온 동력경운기, 동력방제기, 동력탈곡기를 소형기계로, 일관기계화체계의 형성을 가져온 트랙터, 콤팩트인, 이앙기를 중형기계로 설정한다. 그리고 중형이나 대형이냐는 질적 차이를 갖는 것이 아니라 동일기종내에서 마력의 크기, 몇 條式인가, 보행식인가 승용식인가 등 양적 차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表 1〉 經營規模 階層別 農機械 普及率 및 保有率

(단위 : %)

(1980년)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마인더	전조기
0.5ha 미만	소유 비율	4.5	0.05	0.04	0.01	0.05	0.01
	보유 비율	9.3	10.5	2.3	4.9	2.4	3.6
0.5~1ha	소유 비율	10.1	0.08	0.14	0.03	0.2	0.04
	보유 비율	24.3	18.3	8.5	13.6	10.2	14.0
1~1.5ha	소유 비율	19.1	0.13	0.4	0.06	0.53	0.1
	보유 비율	26.9	18.2	14.2	15.7	16.5	23.7
1.5~2ha	소유 비율	29.9	0.21	1.1	0.13	1.3	0.17
	보유 비율	18.3	13.0	17.0	14.4	17.9	17.6
2~3ha	소유 비율	43.5	0.4	3.3	0.4	3.7	0.3
	보유 비율	15.0	13.0	28.6	21.9	28.0	18.5
3ha 이상	소유 비율	63.7	2.7	11.7	1.7	11.4	1.4
	보유 비율	6.4	27.0	29.4	29.6	25.0	22.6
(1990년)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마인더	전조기
0.5ha 미만	소유 비율	15.0	0.4	1.1	0.4	0.4	0.4
	보유 비율	9.5	4.4	2.9	3.6	3.0	2.9
0.5~1ha	소유 비율	38.9	1.2	4.6	1.2	2.3	2.1
	보유 비율	26.5	12.6	13.1	11.9	17.4	14.2
1~1.5ha	소유 비율	60.9	2.3	12.5	2.8	5.8	6.0
	보유 비율	26.8	16.6	22.9	18.0	28.6	26.6
1.5~2ha	소유 비율	75.2	4.5	23.4	5.5	8.6	10.3
	보유 비율	18.0	17.4	23.3	19.3	23.0	24.8
2~3ha	소유 비율	86.4	9.9	38.3	11.3	11.3	13.4
	보유 비율	14.0	25.8	25.8	27.0	20.4	21.8
3ha 이상	소유 비율	95.1	26.4	53.3	25.2	12.5	17.5
	보유 비율	5.2	23.1	12.1	20.3	7.6	9.6

資料 : 『농업센서스』(1980, 1990).

註 : 1) 보급률은 각 계층 농기계소유대수를 각 계층 농가수로 나눈 것.

2) 보유율은 기종별 각 계층 농기계소유대수를 각 기종 전체대수로 나눈 것.

중형기계가 상당히 보급된 1990년에도 1980년과 마찬가지로 규모가 클수록 보급률이 높고, 보유율 역시 2ha이상 상층농이 트랙터 49%, 이앙기 38%, 콤바인 47%로 여전히 중형기계 보급대수의 절반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각종 사례연구들에 나타난 계층별 중형기계 보급률에서도 상층농이 마을내 중형기계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⁶⁾[〈表 2〉 참고]. 특히 3ha이상층은 水稻作 기간작

(6) 장상환 외(1991)은 경남지역내 지대별로 총 7개 마을 340호에 대한 사례, 이동호 외(1992)는 전북 평야지대에서 수도작을 중심으로 하는 농가 75호(이중 50호는 3ha이상 농가를 각 지역에서 선정 한 것이고 나머지 25호는 3ha미만의 농가로서 한 마을을 전수조사한 것임)에 대한 사례, 김병택 외(1992)는 김해시에 속한 평야지대 한 마을 52호에 대한 사례이다. 이들 사례조사에서 나타난 중형기계 보급률과 농업센서스의 보급률의 차이는 전자는 주로 수도단작지대나 수도작이

〈表 2〉 經營規模 階層別 中型機械 普及率(事例調査)

		0.5ha미만	0.5~1ha	1~1.5ha	1.5~2ha	2~3ha	3ha이상
장(1991)	트랙터	—	—	0.08	—	0.45	0.76
	이앙기	—	—	0.25	0.41	0.58	0.95
	콤바인	—	0.01	0.04	0.03	0.29	0.68
김(1992)	트랙터	—	—	0.1	0.2	0.5	0.8
	이앙기	—	—	0.1	0.5	0.5	0.9
	콤바인	—	—	0.1	0.2	0.2	0.8
		1ha미만	1~2ha	2~3ha	3~4ha	4~5ha	5ha이상
이(1992)	트랙터	—	0.25	0.2	0.38	0.47	0.6
	이앙기	—	—	0.3	0.55	0.53	0.9
	콤바인	—	—	0.3	0.33	0.29	0.4

資料 : 장상환 외(1991), 김병택 외(1992), 이동호 외(1992).

업을 기계에 의해서 처리하는 일관기계화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90년도 농가 경제조사 원자료에서도 3ha이상층의 보급률이 이앙기 73%, 트랙터와 콤바인이 35%로 나타났다[박진도 외(1993)].

농업총조사나 사례조사에 나타난 중형기계의 보급률과 보유율로부터 기계소유농가는 상층농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중형기계가 중하층농에도 상당수 보유하고 있지만, 중하층농중 이들 농가의 숫자는 미미하기 때문에 그들의 경영변화가 중하층농의 일반적인 흐름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중형기계화에 따른 경영변화는 상층농에 집중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機械所有農家=上層農으로 전제할 수 있다. 다만 중하층농중 기계소유농가의 경영변화는 중하층농의 일반적인 흐름과 달리 상층농에 나타난 경영변화와 유사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중형기계가 상층농을 중심으로 보급된 요인은 무엇인가?

첫째, 중형기계가 高價라는 점과 손익분기규모가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콤바인과 트랙터와 같이 천만원대를 넘는 중형기계의 경우 비록 정부의 융자⁽⁷⁾가 있지만 상환부담은 중하층농의 경제적 능력에 비해 큰 것이었다.

또한 중형기계는 고가인데 연간 이용일수가 10~15일 정도로 극히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손익분기규모가 매우 크다. 기계가격의 지속적 인하와 농촌노임 상승에 따라서 손익분기규모는 도입초기보다 낮아졌음에도 80년대 후반 트랙터 7.5ha, 콤바인 7.4ha, 이앙기 3.6ha

중심이 되는 도시근교지대라는 점과 후자는 논과 밭을 합한 경영면적 기준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도작을 중심으로 한 농가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기인하다.

(7) 80년대 중형기계에 대한 정부의 융자율은 트랙터가 70~80%, 이앙기와 콤바인이 80~90%였다.

에 달했다[강정일 외(1989)]. 따라서 중하층농은 자가영농을 목적으로 중형기계를 도입하기 어렵다. 농업기계화연구소(1983)의 설문조사⁽⁸⁾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 설문조사에서 소농의 경우 기계 미구입사유로 영농규모가 적음이 51%, 경제적 부담능력의 저위가 26%로 나타났다. 경제적 부담능력의 저위는 영농규모와 관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중형기계 도입에서 경영규모의 크기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농의 경우 미구입사유로 운전조작 곤란이 35.2%로 가장 높았고, 영농규모가 적음은 22.2%, 경제적 부담능력 저위는 14.8%로서 영농규모와 관련된 이유는 37%에 불과했다. 이처럼 경영규모의 크기는 중형기계의 도입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었다.

둘째, 중형기계 도입의 필요성이 상층농일수록 컸다는 점이다. 70년대 말 노동력부족문제가 주로 고용노동력에 의존하던 상층농에게 더욱 심각하게 대두되었고 그만큼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중형기계 도입의 필요성이 컸다. 이는 80년대 초 농민들의 중형기계의 구입동기가 고용노동력의 부족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나는 것이었다[농업기계화연구소(1983)].

다음으로 기계소유농가의 또 다른 특징은 젊은 노동력을 基幹으로 한 농가라는 점이다. 중형기계의 경우 소형기계와 달리 전문적인 운전기술을 필요로 하고 또한 운전기술의 여부가 기계이용률뿐만 아니라 수확량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⁹⁾ 따라서 중형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운전기술을 갖출 수 있는 일정한 질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이 중형기계 소유농가가 40대 이하의 젊은 층이 주류를 이루고, 또한 그 대부분이 고졸 이상의 고학력자라는⁽¹⁰⁾ 현실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처럼 기계소유농가가 상

(8) 전국에 걸쳐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마인더, 콤파인 중 한 기종 이상을 소유한 농가 818호와 농기계 미소유농가 382호를 임의선정하여 농업기계화에 대한 각종 여론을 조사한 연구이다.

(9) 농기계 조작기술의 여부에 따라서 기계사용면적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데 콤파인의 경우 1일 평균작업면적은 2,600평이지만, 숙달된 운전자의 경우는 3,500~4,000평 정도로 큰 격차를 보인다[농경연(1988, p. 74)]. 또한 운전기술의 미숙이 농기계고장율 일으키는 주요요인이다. 김성래(1982)에 의하면 사용자과실에 의한 고장이 트랙터 53.2%, 이앙기 47.4%, 마인더 51.9%, 콤파인 57%로 운전기술의 부족이 농기계 고장율 가져오는 주요요인이었다. 운전기술부족에 따른 농기계고장은 농기계 이용률을 낮추는 요인이 되는데 이는 농기계고장이 농기계이용이 많은 농번기에 일시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반면 농기계 대리점이나 수리센터에서는 이에 대응한 충분한 인력과 부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 고장에도 며칠씩 작업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앙기의 경우 운전기술에 따라서 缺株率의 발생비율, 栽植精密度의 차이를 가져와 收穫率 증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박홍진(1995, pp. 82~85)].

(10) 김영석 외(1980)에서 연령별 농기계소유를 보면, 36~45세층이 보유율이 가장 높았고, 학력별에서도 농기계를 가장 많이 구입한 계층은 고졸계층으로 이 계층의 보유 농가수가 전체보유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트랙터 41%, 경운기 및 이앙기가 각각 40%, 마인더 및 콤파인이 각각 46%를 차지하였다. 또한 농경연(1988, p. 65)에서도 경영주의 연령별 보유실태를 보면 21~30세의 청년층에서 농기계보유비율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을수록 그 비율이 낮아지고, 학력별로 보아도 학력이 높을수록 보유비율이 높았다.

충농중에서도 기간농가라 할 수 있는 젊은 노동력을 가진 농가가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은 향후 생산담당층이 누구인가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측면이다.

3. 中型機械 所有에 따른 經營變化

중형기계의 도입은 노동력부족에 따른 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기계의 경제적 이용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였다. 중형기계 소유가 상충농이 중심이었지만, 그들 경영규모로도 손익분기규모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기계소유농가는 기계이용면적을 높이지 않는 한 기계비용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기계소유농가에 있어서 기계이용률의 제고는 그들 경영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고, 그 대응이 기계소유농가의 경영 변화의 핵심을 이루게 된다. 기계이용률을 높히는 방법으로는 농지구입 또는 임차를 통한 경영규모 확대나 기계작업규모의 확대(작업수탁)가 있다. 이하에서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살펴본다.

3.1. 經營規模의 擴大

현재 高地價下(현실지가>수익지가)에서 개별경영의 규모확대는 농지구입보다는 주로 임차를 통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계소유농가의 경영규모 확대는 借地型 上層農의 형성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상충농의 동향을 살펴보자. 농업총조사에 나타난 경지규모별 농가구성⁽¹¹⁾을 보면, 전체 농가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2~3ha층은 1980년 107,559호(전체농가에서 비중은 5%)에서 1985년 87,391호(4.6%)로 감소했다가 1990년 129,510호(7.5%)로 증가했다. 3ha이상층도 동기간 31,163호(1.4%)→23,241호(1.2%)→43,533호(2.5%)로 2~3ha층과 마찬가지로 추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상충농의 증가과정에서 주목되는 변화는 차지형 상충농의 형성이다. 상충농의 논보유형태별 농가구성을 보면(〈表 3〉참고), 차지형 상충농의 비중은 56.3%(90,177호)이고, 특히 임차에 의해서 이 계층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 소자작농과 순소작농의 비중이 1/3에 달한다.⁽¹²⁾

(11) 1985년은 간이농업조사의 수치임. 논외의 경우 주작목이 米作이란 점에서 논보유형태별 농가구성을 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지만 이에 관한 통계는 1980년과 1990년 농업총조사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경지규모별로 80년대 전반의 추이를 보았다.

(12) 농가경제조사나 각종 사례연구에 나타난 상충농의 대부분은 차지형 상충농이다. 90년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에서 3ha이상층 105호중 소작지를 보유하고 있는 차지형 상충농이 93호이고 소작지율은 47.8%에 달한다[박진도 외(1993)]. 또한 장상환 외(1991)에서는 전체 조사지역내 2ha이상층 63호중 임차농은 47호(74%), 이동호 외(1992)에서는 60호중 36호(60%), 김변택 외(1992)에서는 27호중 19호(70%), 박진도 외(1993)에서는 69호중 57호(82%)로 차지형 상충농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表 3〉 上層農의 保有形態別 農家構成(1990年) (단위: 호, %)

	총 농가수	자 작 농		자소작농		소자작농		소 작 농	
		실수	비중	실수	비중	실수	비중	실수	비중
2~3ha	121,689	53,867	44.3	28,832	23.7	27,542	22.6	11,448	9.4
3ha이상	38,607	16,252	42.1	7,970	20.6	10,101	26.2	4,284	11.1
합 계	160,296	70,119	43.7	36,802	23.0	37,643	23.5	15,732	9.8

資料: 농림수산부(1990), 『농업총조사』.

註: 비중은 각계층 총농가수에 대한 보유형태별 농가의 비중.

그리고 1980년의 농업총조사에서는 임대차와 관련된 통계가 없기 때문에 80년대의 상황을 직접 파악할 수 없지만, 상층농의 임차지 규모와 차지율로부터 차지형 상층농은 주로 80년대 중반 이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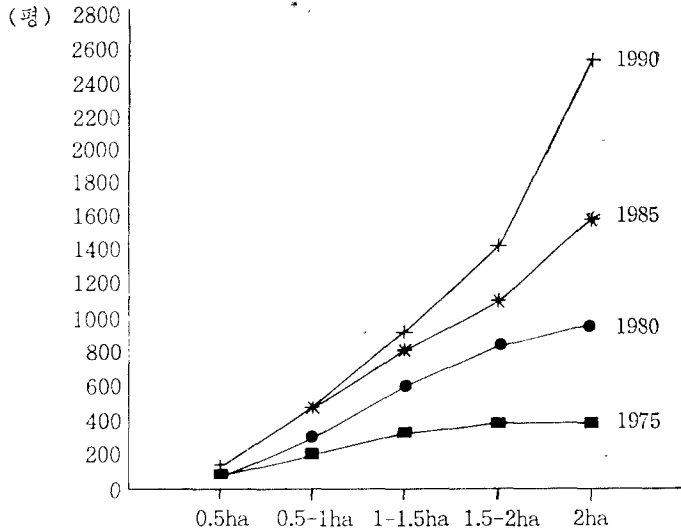
『농가경제통계』에 나타난 각 계층의 호당 평균 논차지면적의 추이(〈그림 1〉 참고)를 보면, 1ha이하층은 80년대 들어와서 임차규모가 거의 변화가 없고, 1~2ha의 중간층은 약 300~600평 정도 늘어났지만, 2ha이상층은 1980년 1,000평, 1985년 1,600평, 1990년 2,500평으로 80년대 중반 이후 급속히 임차규모를 확대시키고 있다. 그 결과 상층농과 여타 계층의 임차규모의 차이는 계속 확대되었고, 1990년의 경우 1.5~2ha층과도 약 1,000평 정도 차이를 나타내었다.⁽¹³⁾

또한 상층농의 차지율은 80년대 중반까지 여타 계층에 비해 낮거나 비슷하였지만 80년대 후반으로 오면서 임차규모의 급속한 확대에 힘입어 차지율이 대폭 상승하고 여타 계층과도 격차를 나타내었다(〈表 4〉 참고).

이러한 상층농의 임차지 규모와 차지율의 추이는 상층농으로의 상승 또는 상층농의 규모 확대가 임차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고, 80년대 중반 이후 상층농 증가가 차지형 상층농에 의해서 주도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¹⁴⁾

그러면 차지형 상층농의 형성 및 그들에게로 임차지의 집중이 중형기계화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이는 중형기계화로 규모확대의 기술적·경제적 조건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13) 90년대 들어와서 이루어진 사례연구들에서 상층농의 임차규모가 여타 계층에 비해 현저히 많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註 1의 사례연구 및 박민선(1993), 박진도 외(1993)의 사례연구에서도 동일한 현상을 볼 수 있다. 특히 박진도 외(1993)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평야지대, 도시근교지대, 중산간지대 등 지대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4) 한 마을의 10년간 계층변동을 조사한 장상환 외(1991)의 사례연구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이 연구에서 2ha이상층의 동향을 보면, 1982년 41호(그중 임차농 16호)→1987년 48호(그중 임차농 28호)→1991년 63호(그중 임차농 47호)로 나타났다.



資料：『농가경제통계』, 각년도.

〈그림 1〉 耕地規模別 戶當 논賃借面積의 推移

〈表 4〉 階層別 借地率의 推移(農家經濟統計)

		1975	1980	1983	1985	1987	1989	1990
논 임 차 지 율	0.5ha미만	14.6	12.1	17.8	21.5	23.1	26.3	24.3
	0.5~1ha	15.9	21.1	29.5	31.7	30.1	31.9	30.8
	1~1.5ha	15.9	26.1	36.0	33.2	33.8	36.6	36.2
	1.5~2ha	13.0	26.3	24.4	32.3	25.1	36.8	39.5
	2ha 이상	8.3	19.3	23.9	32.1	31.4	40.7	44.2
전 체 임 차 지 율	0.5ha 미만	14.6	15.5	20.5	23.5	25.2	27.8	26.8
	0.5~1ha	15.5	20.8	27.7	28.9	28.5	32.5	31.1
	1~1.5ha	15.2	24	30	32.3	31.9	36.6	36.0
	1.5~2ha	13.8	23.5	25.3	30.7	33.9	34.9	37.7
	2ha 이상	8.6	17.2	24.9	30.9	30.9	41.6	44.1

資料：『농가경제통계』, 각년도.

註：전체임차율은 논 이외에 밭, 과수원경지를 포함한 것임.

첫째, 중형기계의 소유는 규모확대에 따른 노동력제약을 완화시킴으로써 규모확대의 기술적 조건이 되었다. 중형기계 도입에 따른 노동과정의 성과(노동시간의 대폭절감 및 전작업의 노동력 수요의 평준화, 고용노동력의 배제)는 가족노동력에 의한 경작규모의 한계를 10ha까지 대폭 확대시켰다. 70년대 말~80년대 초반 노동력부족과 농업노임의 급상승에 대응하여 상층농이 가족노동력으로 경작할 수 있는 규모로 축소하여 중농화하였던 것과 달리 농업노동력 부족이 더욱 심화된 80년대 중반 이후 상층농이 증가할 수 있었던 토대는 바로

〈表 5〉 上層農의 土地純收益과 下層農의 水稻作所得의 比較 (단위 : 원/10a)

	0.5~1ha 평균도작 소득(A)	2ha 이상 평균 순수익(B)	B/A	0.5~1ha 한계도작 소득(C)	2ha 이상 한계 순수익(D)	D/C
1984	279, 272	229, 960	0.82	292, 050	248, 112	0.85
1985	292, 998	258, 994	0.88	306, 802	276, 035	0.90
1986	312, 295	261, 436	0.84	326, 350	278, 282	0.85
1987	339, 947	324, 019	0.95	354, 295	341, 457	0.96
1988	450, 539	415, 738	0.92	466, 221	436, 967	0.94
1989	460, 036	429, 711	0.93	477, 711	451, 134	0.94
1990	454, 986	421, 293	0.93	473, 120	447, 586	0.95
1991	465, 915	439, 815	0.94	487, 715	465, 339	0.95

	0.5ha 미만 평균도작 소득(A)	2ha 이상 평균 순수익(B)	B/A	0.5ha 미만 한계도작 소득(C)	2ha 이상 한계 순수익(D)	D/C
1989	432, 326	429, 711	0.99	448, 024	451, 134	1.01
1990	441, 613	421, 293	0.95	456, 985	447, 586	0.98
1991	447, 425	439, 815	0.98	468, 958	465, 339	0.99

資料 : 『농가경제통계』, 각년도.

註 : 1) 평균순수익 = 조수익 - 1차생산비 - 조세공과 및 제부담금 - 자본용역비.

한계순수익 = 평균순수익 + (대농구, 영농시설비의 감가상각비) + 자가축적비 + 고정자본이자.

2) 도작소득 = 순수익 + 자가노력비, 한계도작소득 = 한계순수익 + 자가노력비로 계산.

이러한 기술적 조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중형기계화에 따라서 상층농의 地代負擔力이 제고되었다. 중형기계 소유를 토대로 상층농은 여타 계층에 비해 기술적 우위를 접하게 됨으로써 경영규모 계층간 생산력격차가 형성되었다.⁽¹⁵⁾ 그 결과 상층농의 토지순수익(지대부담력)이 하층농의 稻作所得에 근접할 정도까지 증가하였다(〈表 5〉 참조).⁽¹⁶⁾ 이는 상층농이 임차를 통하여 대규모경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제적 조건이 서서히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현단계에서 상층농의 지대부담력은 하층농을 구축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상층농은 이용하는 농가나 부채지주의 임차지를 둘러싼 경쟁에서 우위에 서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5) 수도작의 노동생산성 격차를 보면, 80년대 중반까지는 계층간 격차가 적었지만, 80년대 중반이후 격차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2ha이상층과 1.5~2ha층과도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이러한 격차의 형성은 토지생산성이 비슷한 가운데 중형기계를 보유한 상층농의 노동투하시간이 중하층농에 비해 적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이다. 또한 생산비의 격차 역시 노력비의 계층간 격차로 인하여 노동생산성의 격차와 유사한 추이를 나타내었다[박홍진(1995, pp. 101~103, 113~115)].

(16) 〈表 5〉에서 0.5ha미만층과 2ha이상층의 비교를 1989년 이후로 한 것은 1984~1988년까지 0.5ha미만층의 통계가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농산물생산비 표본농가중 0.5ha미만층의 표본수는 83년 이전의 경우 300~500호로 여타 계층과 거의 비슷하게 구성되었지만, 1983~1988년 사이에는 최소 10호에서 최고 57호로 여타 계층의 표본수 200~400호에 비해 현저히 적다. 그러나 1989년 이후에는 여타 계층과 균형을 맞추어 조사되고 있다.

이것이 농업소득에 의한 가계비 충족도가 저하되는 상황⁽¹⁷⁾에서 임차에 대한 요구가 모든 계층에서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중형기계 보유율이 높은 상층농이 임차지를 집적할 수 있었던 요인인 것이다. 임차규모가 큰 상층농의 중형기계 보유율이 여타 계층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는 점, 상층농의 임차규모 및 임차지율이 급속하게 증가한 시기 및 상층농이 증가한 시기가 중형기계화가 본격화되었던 시기와 일치한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처럼 중형기계화에 의해 형성된 대규모경영 성립의 기술적·경제적 조건을 토대로 해서 기계소유농가의 규모확대 필요성이 차지를 통한 규모확대, 즉 차지형 상층농의 형성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그러므로 차지형 상층농의 형성은 기계소유에 따른 기계소유농가의 경영변화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이 차지형 상층농의 형성을 전적으로 기계소유에 따른 경영변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상층농 중에서도 중형기계를 보유하지 않은 농가가 상당수에 달하고, 상층농 중 농업수익성의 악화에 대응, 추가적인 소득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모를 확대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현재 농촌노임의 급상승과 농업노동력 부족, 기계화에 따라 종래 인력에 의존하던 생산방식이 불가능한 사정하에서 기계비소유농가의 규모확대, 특히 2ha 이상으로의 규모확대는 작업위탁을 전제로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들 농가는 비록 동기는 기계소유농가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토대는 중형기계화에 있다는 점에서 차지형 상층농의 형성은 중형기계화가 가져온 수도작경영 변화의 한 측면이라 할 수 있다.

3.2. 作業受託

기계소유농가의 기계이용실적을 보면(〈表 6〉 참고), 중형기계의 경우 자가작업보다 작업수탁쪽이 훨씬 크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1985~91년 사이 평균 임작업률이 트랙터 75%대(임작업 규모는 14~18ha), 콤파인 80%대(8~13ha), 이앙기 65%대(3ha)에 달하고 있다.⁽¹⁸⁾ 이것은 작업수탁이 기계소유농가에 있어서 불가결한 경영형태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중하층농에 속하는 기계소유농가에 있어서 작업수탁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¹⁹⁾

(17) 80년대 후반으로 오면서, 농업소득에 의해서 가계를 꾸릴 수 있는 계층은 1.5ha이상층뿐이었고, 2ha이상층도 1991년 농업소득에 의한 가계비 충족률이 115%에 불과했다. 특히 1ha미만층은 농업소득에 의한 가계비 충족률이 30~60%에 불과하여 가계 유지를 위해서는 임차를 통한 규모확대 또는 겸업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8) 기계이용실적은 80년대 초반에도 이와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김영식 외(1980, 1981), 농촌진흥청(1983)에서 각 기계의 이용면적은 콤파인 12~14ha, 이앙기 4~6ha, 트랙터 20~40ha였고, 임작업률도 기종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50~60%에 달했다.

(19) 농경연(1988, p. 71)의 조사결과를 보면, 농가의 경지규모별 농기계 임작업률(타가이용면적/전체이용면적)을 보면 1ha미만층의 경우 트랙터, 이앙기, 콤파인, 건조기의 임작업률이 94~98%, 1~2ha층은 85.3~94%로 높은 임작업률을 보인다. 이 연구 이외에도 김영식 외(1980, p. 105), 농협(1983, pp. 101~107), 농경연(1991, pp. 42~43)에서도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表 6〉 農機械 臺當 利用實績

(단위 : ha, %)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1985	자 가	2.1	3.4	2.1	1.8
	타 인	1.3	10.7	0.35	8.3
	임작업률	38.2	75.9	14.3	82.2
1987	자 가	2.3	4.3	1.7	2.0
	타 인	1.2	15.5	3.2	9.7
	임작업률	34.3	78.3	65.3	82.9
1989	자 가	2.6	5.0	1.6	2.0
	타 인	1.1	16.7	3.0	11.9
	임작업률	29.7	77.0	65.2	85.6
1991	자 가	2.1	4.3	1.5	1.9
	타 인	0.6	13.0	2.7	8.6
	임작업률	22.2	75.1	64.3	81.9

資料 : 농수산부 농업기계과, 『업무자료』, 각년도.

註 : 임작업률은 임작업면적/전체이용면적.

〈表 7〉 水稻作 10a當 賃借經營의 收支(1990)

(단위 : 원, %)

	평 균	0.5ha 미만	0.5~1ha	1~1.5ha	1.5~2ha	2ha 이상
조 수 익 (A)	581,064	573,357	579,176	582,167	582,331	589,462
가족노동보수 (B)	296,410	272,975	291,438	303,809	300,409	308,446
B/A	51.0	47.6	50.3	52.2	51.6	52.3
(C)	238,303	215,639	233,521	245,592	242,176	249,500
C/A	41.0	37.6	40.3	42.2	41.6	42.3
노동시간	47.4	55.2	52.2	46.7	41.1	37.3
시간당 보수 B	6,253	4,945	4,945	6,506	7,309	8,269
C	5,027	3,906	3,906	5,269	5,892	6,689

資料 : 『농산물생산비조사결과보고』(1990) 및 『농협조사월보』(1990).

註 : 1) B는 임차료가 30%, C는 임차료가 40%인 경우임.

2) 가족노동보수 = 조수익 + 자가노동 - 기초생산비 - 자본용역비 - 조세공과등 - 임차료.

3) 시간당 노임은 2,320원(남자고용노임 1일 8시간 기준).

이처럼 기계소유농가가 경영규모 확대와 병행하거나 아니면 전적으로 작업수탁에 집중하게 된 요인은 무엇인가?

기계를 소유한 개별경영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임차와 작업수탁중 어느 쪽이 경제적으로 유리한가에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계를 이용하여 동일한 시간을 작업하는 경우 작업수탁과 임차시 노동보수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表 7〉은 1990년 임차경영의 수지를 계산한 것이다. 임차의 경우 소작료를 40%로 할 때

가축노동보수(미작소득)는 조수익의 38~42% 수준이고, 30%일 경우는 조수익의 47~52% 수준이다. 계층별로는 2ha이상층이 가장 높다.

중형기계가 2ha이상 상충농을 중심으로 보급되었음을 전제로 할 때, 작업수탁의 경우와 비교할 계층은 2ha이상층이다. <表 7>에서도 2ha이상층의 노동투하시간은 37.3시간/10a으로 대부분의 작업을 기계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ha이상층의 시간당 노동보수는 소작료가 40%일 때 6,689원, 30%일 때 8,269원으로서 남자일고노임 2,320원과 비교하면 약 3~4배 정도 많다. 그러나 『農産物生産費調査』의 노동시간 산정방법이 갖는 문제점⁽²⁰⁾을 고려할 때 이 수치는 과대평가되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다음으로 수탁의 경우 노동보수를 살펴보자. 수탁자가 작업수탁을 통해 얻게 되는 노동보수는 작업수탁료 자체가 아니다. 作業受託料는 오퍼레이터 임금+감가상각비+연료비(운활유비 포함)+수리비로 구성되기 때문에 수탁자의 노동보수는 오퍼레이터 임금만 해당된다.

<表 8>은 수확작업의 작업수탁료를 각 항목별로 나누고 오퍼레이터 임금 부분만을 추출한 것이다. 작업수탁료는 지역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평균치를 이용하였다.

<表 8>에서 수확작업 수탁의 경우 오퍼레이터 임금은 시간당 13,546원이었다. 이양작업의 작업수탁료를 동일한 방법에 의해서 오퍼레이터 임금만 추출해보면 7,624원이었다[박흥진(1995, p.162)]. 수확작업의 오퍼레이터 임금이 이양작업보다 높은 이유는 콤바인이 고가 기종이고 수확과 탈곡작업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작업수탁료가 다른 작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만[김정호 외(1990), 송대회 외(1991)], ha당 작업시간은 이양기와 차이가 없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양작업 또는 수확작업 수탁시 오퍼레이터 임금은 농촌 남자 일고임금수준(시간당 2,320원)보다 각각 약 3배, 5배 정도 높다. 이를 2ha이상층의 시간당 노동보수와 비교해 보면 소작료가 30%일 경우 이양작업만 임차시 노동보수보다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후자의 소득이 과대평가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임차보다는 수탁작업의 노동보수가 높다고 하겠다.

(20) 『농산물생산비조사』에서는 직접노동시간만 계산되어 있고 간접노동시간(영농계획서 작성, 영농관련교육 및 집회출석, 자금조달 및 상환, 고용노동력의 동원 및 축력·동력의 임차, 자체조달, 식사운반 및 사후정리 등)은 제외되어 있으며, 농업생산의 계절성과 노동과정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불가피한 작업대기시간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서 농가의 노동투하시간을 실제 작업시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은 투입노동시간을 과소평가하게 되고, 그 결과 시간당 가축노동보수는 과대평가된다[이영기(1992, pp.172~174)].

<表 8> 收穫作業의 手數料 構成(1990年, 10a當)

① 갈가상작비 ¹⁾
콤바인(3조식)의 연간 갈가상작비 (8,680천원*0.9)/7년=1,116천원
1년 사용면적 : 18일(1년 사용일수)*3,000평(1일 작업면적)=54,000평
10a당 갈가상작비=6,210원
② 10a당 작업시간 ²⁾ : ha당 9.7시간, 10a당 0.97시간
③ 연료비 ³⁾ : 시간당 연료비=920원, 10a당 연료비=892원
④ 수리비 ⁴⁾ : 시간당 수리비=3,646원, 10a당 수리비=3,758원
⑤ 수확작업의 수수료=24,000원 ⁵⁾
⑥ 수확작업의 수수료 구성(10a당 24,000원)=6,210원(갈가상작비)+892원(연료비) +3,758원(수리비)+13,140원(오퍼레이터 임금)
⑦ 시간당 오퍼레이터 임금 : 13,546원

註 : 1) 갈가상작비=(기계가격*0.9)/내용연수, 기계殘存價를 기계가격의 10%로 함. 콤바인(3조, 국제)의 가격, 연사용일수 및 1일 작업면적, 내용년수 등은 농수산부 농업기계과의 『업무자료』(1990)를 이용.

2) 강정일 외(1990, p.28).

3) 시간당 연료비=시간당 연료소비량*연료비*1.1(윤활유비용을 10%로 가산한 것), 콤바인 시간당 연료소비량 4.08리터, 휘발유가격=205원/리터.

4) 시간당 수리비=구입가격*수리비 계수/100, 콤바인(3조)의 수리비 계수는 0.042.

5) 김정호 외(1990) : 삼교위탁영농회사 24천원/10a, 남양주군 사례농가 36천원/10a

강정일 외(1990, p.41) : 기계화영농단 20,840원/10a

송대희 외(1991) : 김제 위탁영농단 2만원/1a(1990년 경우)

또한 작업수탁은 임차에 비해 노동소득의 측면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점을 갖고 있다. 첫째, 농기계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즉 기계작업의 경우에도 이양후 補植作業, 수확된 쌀의 운반과 건조작업 등 상당한 노동시간을 필요로 하는 보조작업이 수반된다. 임차의 경우 기계작업에 수반되는 보조작업을 자가노동력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온종일 기계작업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작업수탁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탁자는 기계작업만 하고 보조작업은 賃耕을 의뢰한 위탁농가가 하기 때문에 온종일 기계작업이 가능하다.

둘째, 농업생산의 안정성면에서 작업수탁이 유리하다. 작업수탁은 作況에 관계없이 일정한 작업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작황에 영향을 받는 임차보다 유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특히 米價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임차경정보다 작업수탁이 더욱 유리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작업수탁의 장점들이 기계소유농가에 있어서 작업수탁을 불가결한 경영형태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이 곧바로 기계소유농가의 경영변화가 임차가 아닌 작업수탁쪽으로 전일화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첫째, 작업수탁은 경영규모 확대와 달리 작업면적의 확대로서 경영의 다각화등을 통한 경영자의 연중취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농업의 축적기반이 될 수 없고, 단지 기계투자에 따른 비용경감과 추가적인 노임소득의 획득차

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둘째, 작업수탁에서는 안정적인 수탁면적의 확보가 문제가 된다. <表 6>에 나타나 있듯이 기계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각 기계의 임작업면적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중형기계 보급 확대와 함께 최근 위탁영농회사의 등장은 기계소유농가간에 수탁을 둘러싼 경쟁을 격화시키고 작업수탁료의 인하를 가져옴으로써 수탁소득의 감소 및 적정 수탁면적 확보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작업수탁은 중형기계화의 전개에 따라 나타난 토지소유(개별경영면적)와 생산력(중형기계)과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등장한 것인 동시에 토지소유의 성격(土地의 資産的 保有傾向=高地價, 高地代)이 생산력발전을 강하게 규정하고 있는 단계를 반영한 타협적인 경영형태로서 과도기적인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작업수탁은 현단계에서 비록 임차보다 유리한 것이지만 안정적인 경영의 토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상충농의 경영규모확대는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측면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작업수탁의 확대와 함께 차지형 상충농이 증가하였던 배경이다. 실제 사례연구들에 나타난 상충농은 대부분 借地+受託型을 취하고 있다.

한편 작업수탁이 임차보다 유리하다는 점과 기계화에 따른 노동력절감을 기초로 상충농에서도 복합경영이 진전되었다. 상충농중에서는 현재의 경영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적극적인 수탁작업으로 기계이용의 효율성을 꾀하는 동시에 미작에서 절감되어진 노동력을 이용하여 축산이나 시설원예작목을 복합경영하여 소득극대화를 꾀하는 受託-複合經營型 농가들이 나타났다.

90년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에 나타난 3ha이상층의 영농형태를 보더라도 총 105호중 단일경영은 41%(43호, 이중 40호가 미작단일경영), 준단일 27%(28호), 복합경영이 32%(30호)로 나타났다. 상충농의 6할 이상이 두 개 이상의 주작목을 복합적으로 생산하고 있다[박진도의(1993, pp. 100~101)]. 또한 박민선(1993)에서도 기계장비율이 높은 상충농의 경영유형을 보면, 도시근교지역에서는 미작 이외 상업적 작목의 도입없이 전적으로 수탁작업에 의존하는 형이 많고, 그의 지역에서는 수탁과 함께 상업적 작목을 복합적으로 경영하는 농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박진도의(1993)의 경남 창원군 사례에서도 미작규모가 5ha이상으로 다른 작목을 도입할 여력이 없는 농가를 제외하고 2~5ha층은 미작과 함께 축산이나 과실을 경영부분내에 도입하고 있고, 괴산군 사례에서도 일관기계화체제를 갖춘 농가의 경우 미작부분을 크게 확대한 농가는 없고, 주로 수탁작업에 의존하면서 축산과 다양한 발작물을 경영에 도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전형적인 수도작지대에서 상충

농들은 규모확대보다는 작업수탁과 有畜複合化를 통하여 소득극대화를 꾀하고 있다[박흥진 (1995)].⁽²¹⁾

기계소유농가의 복합화는 농업수익성의 악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농업소득의 증가 및 농업노동력의 취업기회의 확대라는 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계화라는 새로운 생산력과 영세농경제간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써 토지 및 노동력 이용의 정상적인 전개방향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농업의 전개방향을 전망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그러나 기계소유농가의 복합화가 농산물수입 전면개방하에서도 농업이 존속될 수 있는 토대로 될 것인가라는 점은 경지의 汎用化를 위한 경지기반의 정비, 작목선택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가격조건의 형성 등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그 가능성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4. 中型機械 所有農家の 經營變化가 갖는 含意

이상의 고찰로부터 기계소유농가의 경영변화는 차지를 통한 경영규모 확대와 작업수탁으로 대표될 수 있다. 그러면 기계소유농가의 이러한 경영변화가 농업구조 변동과 관련하여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먼저 기계소유농가가 쌀생산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 <表 9>를

<表 9> 耕地規模別 經營面積 및 借地面積의 推移 (단위 : ha, %)

	1970년					1990년				
	경영면적 (A)	비중	차지면적 (B)	비중	차지율	경영면적 (A)	비중	차지면적 (B)	비중	차지율
0.5ha 미만	1,194,599	9.9	234,476	12.3	19.6	88,775	7.4	19,014	5.4	21.4
0.5~1ha	3,430,519	28.5	639,038	33.5	18.6	270,723	22.7	65,476	18.7	24.2
1~1.5ha	3,043,538	25.3	512,523	26.9	16.8	291,636	24.4	81,004	23.2	27.8
1.5~2ha	1,868,657	15.5	262,563	13.8	14.1	219,383	18.4	67,239	19.2	30.6
2~3ha	1,687,874	14.0	185,302	9.7	11.0	208,868	17.5	71,118	20.4	34.0
3ha 이상	820,708	6.8	73,431	3.8	8.9	114,637	9.6	45,515	13.0	39.7
계	12,045,895	100	1,907,592	100	14.8	1,194,022	100	349,270	100	29.6

註 : 1) (A)는 총차지면적에 대한 각계층의 차지면적의 비중임.

2) 전체 경지면적(논+밭)에서 소작지의 비중은 27.9%(503,177ha).

(21) 이 지역은 소작료가 40% 수준이기 때문에 기계 가진 상층농중에서 임차를 해서 수도작규모를 늘린 경우는 없고, 그 대신 규모의 차이는 약간씩 있지만 수탁작업과 축산을 병행하고 있다. 복합화의 결과, 자가경영규모가 5ha로 수탁 및 축산규모가 적은 농가와 수도작 규모는 3ha로 작지만 수탁 및 축산규모가 큰 농가의 농업소득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보면 기계소유농가의 중심을 이루는 2ha이상은 전체 농가의 10%에 불과하지만, 전체 논 경영면적의 27%, 논 차지면적은 33.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1ha미만층이 전체 농가중 58.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논 경영면적의 30.1%, 논 차지면적의 24.1%에 불과하고, 1~2ha층은 전체 농가중 31.1%, 논 경영면적의 42.8%, 논 차지면적의 42.4%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뚜렷이 비교된다. 이처럼 기계소유농가는 기계소유를 바탕으로 입차지를 집중하고 경영면적을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 쌀생산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층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기계소유농가가 쌀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들이 소유하는 있는 경영면적에 국한되지 않는다. 작업수위탁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를 보면[농림수산부(1990), 『농업총조사』], 전체농가(150만호)에 대한 위탁농가의 비율이 수확작업 60.4%, 이앙작업 56.2%, 논갈이(경운·정지)작업 47.5%, 방제작업 35%⁽²²⁾로 최소한 하나 이상의 농작업을 위탁하는 농가가 전체농가의 60%에 달한다.

수도작에서 작업수위탁의 일반화는 작업수탁의 담당자인 기계소유농가가 자신의 경영지를 넘어서 기계소유농가의 수도작 작업 대부분을 처리하고 있는 실질적인 생산담당층임을 의미한다.⁽²³⁾ 반면 기계비소유농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하층농은 비록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경영지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여전히 높다고 하지만(〈表 9〉 참고), 자가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계소유농가에 의존하여 생산을 지속한다는 점에서 소생산자로서 독립성을 상실하였고, 생산에서의 역할은 작업보조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농업구조변동에 있어서 기계소유농가의 경영변화가 갖는 의미는 기계소유농가가 수도작에서 실질적 생산담당층으로 등장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기계소유농가(상층농)는 수도작의 핵심생산계층으로 발전해 갈 것이다. 농촌진흥청(1994)의 조사에서 경영주의 영농가능기간이 5년 이하인 농가가 약 30만호, 6~10년이 약 40만호에 달하지만[농촌진흥청(1994, pp. 11~22)],⁽²⁴⁾ 영농후계자가 있는 농가는 13만 4천 호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5~10년 사이에 고령화농가의 은퇴가 급증할 것임을 의미한다. 이

(22) 방제작업의 위탁농가 비율이 여타 작업에 비하여 낮은 것은 동력방제기의 보급률이 42.1%로 높다는 점과 농약제해의 빈발에 따른 수탁기피경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3) 이더한 차지형 상층농이 일본 연구자들에 의해 제기된 '새로운 상층농'(소기업농, 대형소농, 자본형 상층농 등)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통계상의 제약이나 관련된 사례연구들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나 현재 형성되고 있는 차지형 상층농이 노임법주의 확립위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은 농지개혁이래 형성, 유지되어온 영세소농구조의 질적 전환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과제이다.

(24) 그리고 경영주 연령분포를 보면, 70세 이상이 약 17만 7천호(총농가수의 11.8%), 60~69세가 약 42만 3천호(총농가수의 28.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 따른 임대농지의 증가와 최근 계속되는 농가감소로 인한 소작료 저하경향⁽²⁵⁾에 따른 임차경영의 수익성 제고는 상층농의 입차에 의한 규모확대를 용이하게 하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다.⁽²⁶⁾

그리고 최근 규모확대에서 기술적 제약으로 남아있던 육묘작업과 건조작업에서도 각 지역에 만들어지고 있는 共同育苗施設과 라이선센터가 완성되면 상당수의 고용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고 그만큼 일관기계화체계가 완전해짐으로써 기계소유농가가 더 큰 규모로 확대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될 것이다. 또한 일관기계화체계에 따른 규모의 경제성은 규모확대에 따라서 기계소유농가의 생산효율성을 높히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이에 따라 기계소유농가의 지대부담력이 제고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농지유동화의 주도성이 점차 상층농에게로 넘어갈 것임을 시사한다.

또한 농업노동력이 고령화·여성화되고, 농업후계자가 절대부족인 상황에서 기계소유농가가 상층농중에서도 40대 이하의 젊은 층이며, 그 대부분이 고졸이상의 고학력자라는 사실은 수도작의 생산담당층으로서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측면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상층농이 곧바로 농업생산의 주체로서 설정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이 경지의 집적과 작업수탁을 토대로 생산의 핵심계층으로 성장해갈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정부의 농업구조개선정책이 지향하는 것과 같이 중하층농의 구축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층농의 지대부담력이 하층농의 소득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그것이 하층농을 구축하고 투하자본에 대한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다만 상층농은 이농한 농가의 농지를 둘러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기계화에 따른 작업위탁의 존재는 결업농이나 고령화·여성화된 농가의 농업체류를 보장해주고 있다. 80년대 들어와서 노동력부족이 심화되고 노동조직이 해체됨에 따라서 인력에 의한 생산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노동능력이 열악한 고령화·여성화농가 및 결업농은 탈농 또는 임대농화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수도작의 기간작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농가는 노동이 집중적으로 필요치 않고, 많은 노동력을 필요치 않는 물관리, 施肥 등 비배관리노동만 수행함으로써 생산을 지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업위탁이 임대보다 경

(25) 농경연에서 영농기장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1991. 4 미발간)에 의하면, 준도시나 근교 농촌(10개 마을)의 임차료 하락은 거의 볼 수 없는 반면, 중간지(10개 마을)에서는 소작료율이 30%대로 떨어졌으며, 산간지(8개 마을)에서는 소작료율이 최소 25%대까지 떨어진 곳도 있다.

(26) 이러한 측면이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 현재 이농가의 농지중 한계농지는 경작방기되고 있다는 사실[박진도(1994, p. 343)]을 고려할 때, 수도작생산이 상당히 축소된 가운데 전개될 것이란 점이다.

제적으로 유리하다[박홍진(1995, pp.126~127)]. 작업위탁의 이러한 측면은 노동력 부족하에서 농업생산을 단증 할 수밖에 없는 고령화·여성화농가 및 겸업농의 안정적인 농업체류를 가능케 하였다. 이러한 측면은 현재 농촌의 임대지 대부분이 재촌지주가 아닌 부재지주의 것이고, 재촌지주의 경우에도 노동능력이 없는 고령화농가가 대부분이라는 각종 사례연구의 결과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²⁷⁾

게다가 겸업취업처의 불안정성 및 겸업소득의 저위성으로 인하여 겸업농은 작업위탁을 토대로 하여 불안정한 농의취업소득을 보완하고 가족노동력의 노동투자기회를 늘리기 위하여 임차를 통하여 규모를 확대하는 농지수요자의 성격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황연수(1989), 안준섭(1991a)].

그리고 정부의 농업구조개선정책에 따라서 농의취업처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현재 농업취업자중 轉業이 곤란한 중노년층이 대부분(1990년 농업종사인구 424만명 중 50세 이상이 48%)이기 때문에 탈농할 농가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현재 하층농의 탈농조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중하층농의 탈농을 전제로 한 상층농만의 규모확대를 통한 생산성 상승을 통하여 미작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농산물수입개방과 농업수익성의 악화 등 어려운 상황에서 성장하고 있는 상층농과 이들에 생산을 의존하면서도 강고하게 농업에 체류하고 있는 중하층농을 어떻게 결합시켜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의 농업구조개선에 있어서 핵심적 과제이다.

5. 맺 음 말

기계화의 진전은 규모확대에 있어서 노동력제약을 해소시켰고, 농가 계층간 생산력 격차의 형성과 작업수위탁이란 농가간 생산관계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상층농이 중심을 이루는 기계소유농가는 이를 토대로 임차를 통한 경영지의 집적과 적극

(27) 장상환 외(1991)의 사례연구(경남지역내 지대별로 총 7개 마을 340호에 대한 조사)에서 부재지주가 소유한 면적은 전체 임차지 면적의 79.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도 외(1993)에서 도시근교지역인 가월, 가촌마을(경남 창원군 소재)의 경우 임대지의 93.4%, 83.5%, 중산간지대인 아랫미랏, 윗미랏, 유창마을(충북 괴산군 소재)에서도 전체 임대지의 74.4%가 부재지주의 농지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제지역에서 재촌지주의 경우에도 일부의 겸업농가를 제외하고는 노동능력이 없는 농가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동호 외(1992)의 전북 평야지대 조사에서도 2ha미만층의 임대농가는 거의 대부분이 고령으로 영농하기 어려운 농가이고, 3ha이상층의 임대농가는 시설형 농업지향농가 또는 겸업농, 고령화농가로 나타났다.

적인 작업수탁을 통하여 기계이용률의 제고라는 경영내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수도작의 실질적인 생산담당층이 되었다. 반면 중하층농이 중심을 이루는 기계비소유농가는 비록 생산자로서의 역할은 축소되었지만, 노동력 부족하에서도 작업위탁을 통하여 여전히 농업에 강고하게 체류하고 있다. 특히 겸업농이 작업위탁을 토대로 농지수요자의 성격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계소유농가의 규모확대와 함께 수탁자와 위탁자 관계의 체계화에도 농업구조개선의 방향이 두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작업수위탁은 영세분산경지에서 자기완결적으로 이루어지던 생산과정이 이제 그 공정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개별경영의 틀을 넘어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생산의 사회화의 진전이자, 생산성이 낮은 농가(기계비소유농가)에서 생산성이 높은 농가(기계소유농가)로 작업단위의 이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생산력 발전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작업수위탁은 개별농가 대 개별농가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짐에 따라서 작업장이 여러 곳으로 분산됨으로써 규모화의 이점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중하층농의 탈농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생산성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마을단위에서 작업수위탁을 체계화시킴으로써 경지의 분산성을 극복하는 것이다. 즉 최소한 마을내 수탁자층(기계소유농가)과 위탁자층(기계비소유농가)의 집단적 계약을 통하여 수탁자의 작업단위를 단일화시킴으로써 더 높은 생산성의 향상과 생산비의 절감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수도작의 실질적 생산담당층으로 등장한 기계소유농가 즉 상층농의 규모확대를 돕는 방안과 함께 기계화에 따라 새롭게 형성된 상층농과 중하층농간의 생산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라는 측면도 농업구조개선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계소유농가의 경영변화가 던져주는 시사점이다.

徳成女子大學校 講師

135-243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 3동 주공아파트 506-907

전화 : (02)574-6357

팩시 : (02)788-2601

參 考 文 獻

강정일 외 (1989): "농기계이용실태 및 경제성 분석," 『농촌경제』 12. 4.

_____ (1990): 『경제외영농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육성방향』, 농경연.

김병택 외(1992): 『농업의 법인경영 분석과 발전전략에 관한 사례조사연구』, 농경연.

김영식 외(1980): 『농업노동력감소와 영농기계화』, 농경연.

_____ (1981): 『영농기계화와 구조개선에 관한 연구』, 농경연.

김정호 외(1990): 『전업농육성과 영농조직 활성화방안』, 농경연.

_____ (1992): 『가족농의 경영분석과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농경연.

김현숙(1991): “농업구조의 재편과 생산조직의 발전방향,” 『한국농업의 위기와 재편방향』, 창비사.

농림수산부(1994): 『농어촌발전대책』.

농림수산부,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

_____, 『농림통계연보』.

_____, 『농업총조사』

농림수산부 농업기계과, 『업무자료』, 각년도.

농촌진흥청(1983): 『농기계이용조직에 관한 연구』.

_____ (1990): 『작목별 작업단계별 노동력 투하시간』.

_____ (1994): 『농가경영상담조사자료』.

농협(1993): 『한국농업의 기계화』.

박민선(1993): “1980년대 한국의 농민계층분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박진도(1992): “한국농업구조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농업정책연구』.

_____ (1994): 『한국자본주의와 농업구조』, 한길사

박진도 외(1993): 『농업구조재편과 지역농업의 발전방향』, 충남대 지역개발연구소.

박홍진(1995): “기계화에 따른 수도작경영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송대회 외(1991): “농촌노동력부족과 위탁영농의 발전방향,” 한국개발연구원 정책연구자료 91-40.

안준섭(1988): “미작농업의 농작업수위탁 실태에 관한 고찰,” 『농협조사월보』 1989. 6월.

_____ (1991a): “농공단지개발이 농가의 취업 및 영농구조에 미치는 영향,” 『농협조사월보』 36. 6.

_____ (1991b): 『영농대행조직의 운영실태와 발전방향』, 농협조사부.

오명석(1982): “농업기계화에 따른 농민경제의 변화,” 서울대 인류학과 석사논문.

이동호 외(1992): 『평야지대의 농업경영 조사연구』, 농경연.

이영기(1992): 『한국농업의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장상환 외(1991): 『농지소유제도 조정에 따른 농가사례연구』, 농경연.

조영탁(1985): “수도작 상충농의 실태와 그 전망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최양부(1984): “한국에 있어서 농업구조의 변화와 구조정책의 새로운 구상,” 『농업구조문제의 현실과 조정정책』, 한국농업경제학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88): 『농업기계화사업의 장기정책방향 연구』.

_____ (1991): 『2000년대 농업기계화의 전망과 과제』.

황연수(1989): 『경남 함양군 이은 농공지구 사례』, 농경연.